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기획예산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
----------	-----

제출년월 : 2023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비(안 제2조)
- 나. 상담대상 범위를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변경함(안 제5조)
- 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무료 운영 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상담 우선 실시 부분 삭제(안 제5조)
- 라. 상담 방법을 종전의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에서 ‘서면, 유선, 인터넷 상담 등’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근성 높임(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9.27.(수)~2023.10.17.(화) [20일간]

-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 추계 등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2]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법률상담관”이란 제2호 상담자의 상담요청에 응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내”를 “성북구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상담 비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도”를 “서면·유선·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담량”을 “상담 수요”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2조 (생 략)</p> <p>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서울 특별시 관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p> <p>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상담책임관</u>”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u>상담</u>”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p> <p>2. “<u>상담자</u>”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3. “<u>법률상담관</u>”이란 제2호 상담자의 상담요청에 응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의2 (현행 제2조와 같음)</p> <p>제5조(운영) ① ----- ----- <u>성북구에</u> ----- ----- -----.</p> <p><u>&lt;삭 제&gt;</u></p> <p>③ <u>상담 비용</u>-----</p>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  
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도 병행  
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회 실시를 원칙  
으로 하되, 상담량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6조(상담방법) ① -----  
-----  
서면·유선·인터넷 온라인 상  
담 등도 --.

② -----  
----- 상담 수요-----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비용발생요인이 없는 경우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김종호